

# 「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2. 9. 17일 장문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12. 9. 24일 제18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,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1. 제안이유

-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야간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통학생들에게 통학택시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지원대상(안 제3조)
  -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(시내버스)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
- 지원신청(안 제4조)
  -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읍·면장에게 신청
- 지원방법(안 제5조)
  - 택시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학택시에 지급
  -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함.

### 3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 임.
  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지원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
  -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·면장에게 신청하고
  - 택시이용 실적에 따라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학택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.
  
- 본 조례안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제23조에 근거하면서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